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090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3.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22

www.thejincook.com sanso@korea.com

# 더해장

# 정 보 공 개 서

(주)섬김과 나눔(F&C Co.,Ltd.)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 (주)섬김과 나눔(F&C Co.,Ltd.)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비동 520호,521호(상현동,

광교우미뉴브지식산업센터)

[전화] 070-4667-0852

[팩스] 031-741-9971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 가맹사업부 031-322-9971 / 영업본부 1577-6387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1. 구입강제품목
- 별첨2. 판매상품 및 판매가격
- 별첨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첨부1. 가맹금예치신청서
- 첨부2.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q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주)섬김과	그 대한 연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비동 520호,521호(상현동, 광교우미뉴브지식산업센터)				
나눔(F&C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E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Co.,Ltd.)	2011.6.10		2011.6.14	손석우	070-	070-4667-0852 031-741-99	
	법인등록번호	134511	-0171857	사업자등록	번호	142-	-81-37417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손석우 김라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비동 520호,521호(상현동, 광교우미뉴브지식산업센터)				
국구진세진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6.10	)~ 현재	손석우	070-4667-0852	031-741-9971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더해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ri	디세자	당사의 기존 브랜드인 [더진국]과는 메뉴와		
명칭	더해장 	조리법이 상이한 배달전문 국밥브랜드		
상 호	더해장 000 점			
사교/나비스교)	The 51 7	출원번호 : 40-2021-0035268		
상표(서비스표)	The off &	등록번호 : 40-1903463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는 별첨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7,904,364	4,380,290	3,524,073	9,140,503	282,503	311,660
2022년	8,302,940	4,075,058	4,227,882	11,410,210	916,124	723,808
2023년	8,107,368	3,451,819	4,655,549	10,966,078	607,685	447,667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려서ㅂ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연 역위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손석우	대표이사	2011.6.10~현재	(주)섬김과 나눔(F&C Co.,Ltd.) 대표이사	가맹본부 업무 <del>총</del> 괄		
관련 임원	김라윤	사내이사	2017.11.02~현재	(주)섬김과 나눔(F&C Co.,Ltd.) 사내이사	가맹본부 경영관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지의스/명)
시김	상근	비상근	극전ㅜ(♂)
2023년 12월 31일	2	-	45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해당 브랜드 포함)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섬김과나눔	가맹사업 경영	2011.7. ~ 현재	더진국(등록번호: 20110100299)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섬김과 나눔	가맹사업 경영	2021.3. ~ 현재	더해장(등록번호:20210906)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섬김과 나눔	가맹사업 경영	2021.7. ~ 현재	요미맘(등록번호:20211653)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본	권리내용	등록번호(등록일자) 출원번호(출원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The Shi She Star Star Star Star Star Star Star Star	간판/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활동	등록 40-1903463(2022.08.29) 출원 40-2021-0035268(2021.02.22)	(주)섬김과나눔	2032.08.29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Π. 가맹본부의 [더해장] 가맹사업 현황

1. [더해장] 을 시작한 날: 2021. 04. 16.(계약체결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없음)

# 2. [더해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ᄼᄌᄼᄸᄀᆡᆛᆡᄔᅳ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주)섬김과 나눔	더해장	손석우	2021.3.~현재	338,비동 520호,521호(상현동,
(F&C Co.,Ltd.)				광교우미뉴브지식산업센터)

###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더해장	대분류	소분류			
-I-M-G	한식	국밥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더해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	10	-	7	7	-	1	1	-
서울	2	2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	-	-	-	-	-
광주	2	2	-	1	1	-	-	-	-
대전	2	2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3	3	-	-	-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1	1	-	1	1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1	1	-	-	-	-

# 5. 최근 3년간 더해장 가맹점 수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10	-	-	-	10
2022	10	5	-	8	-	7
2023	7	-	-	6	-	1

#### 6. 더해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해당 브랜드 포함)

당사는 [더해장]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 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당	뱅점/직영점의	수
十世	이오/이금	ᆼᆸᄑᄭ	등록번호	HO.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섬김과 나눔	더진국	20110100299	한식	85/1	88/1	75/1
가맹본부	(주)섬김과 나눔	더해장	20210906	한식	10/-	7/-	1/-
가맹본부	(주)섬김과 나눔	요미맘	20211653	분식	-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더해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년 말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산출수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평당	상한	평당	하한	평당	记者于
전체	1	69,968	4,664	-	-	-	-	1곳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1							5곳미만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_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류공급액을 기준으로 위 표의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 물류공급액/35%

- 물류공급량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입정도, 판매방식 등에 따라 적확한 수치는 아니어서 실제 가맹점 매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더해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더해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개	978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더해장]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광고 및 판촉비는 아래와 같으며, 2023년에 [더해장]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9,067	्राः (धास्त्रम्	-	
광고	37/E consen	(비공개)	188,260	्राः (धास्त्रम्	-	
판촉	37/E change	(비공개)	20,807	्राः (धास्त्रम्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국민은행 광교상현역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319	031-212-9724

- 예치방법 :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가맹금 예치 가능

ㅇ 은행영업점방문 : 본인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예치

o 인터넷뱅킹이용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SOHO센터 ⇒ 가맹금예치제도 ⇒

가맹점사업자 ⇒ 가맹금예치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더해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보증보험, 예치 중 선택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400				
가입비	3,300	계약 체결 시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1,100	계약 체결 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4,400
가입비	3,300
교육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	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금인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60~88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점주 직접시공	-	-	-	-	
주방설비 및 집기	자율구매	-	-	-	-	
간판	점주 직접시공	-	-	-	-	
식자재	<i>협력업체</i> /가 맹본부	660~880		오픈전일까 지	상품미공급시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기맥히망자 기맥히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더해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본사는 가맹금 분납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슈퍼바이징 비용	가맹본부	하기 참조	매월 25일까지 (前월분)	반환불가	슈퍼바이징 등 가맹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발생금액의 50%(1/N)	가맹본부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2주내	반환불가	광고비로 지불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과정에 따라	가맹본부의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수시교육,

		본사결정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2주내			특별교육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직접시공	범위 및 금액에 대해 본사와 협의	업처	와의 협의사형	5 <del>1</del>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 비용	직접시공	범위 및 금액에 대해 업체와 협의	업처	와의 협의사형	<u>5</u>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기기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POS, CCTV관리비	점주직접구 매	업체와의 계약에 준함	업체와의 협의사항		직접구매	
점포환경 개선비용	계약자	가맹본부 분담부분 없음	업체와의 협의사항			
지연 이자	가맹 본부	연 20%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지급하는 날 반환	날까지여서	

#### 슈퍼바이징 비용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乙"은 "甲"에게 정기, 또는 비 정기(회당) 슈퍼바이징을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다.
- ② "乙"의 요청으로 정기적인 슈퍼바이징 진행 시 "乙"은 월 금 일십일만원(₩110,000/부가세포함)을 부담한다.
- ③ 정기 슈퍼바이징 요청 시 슈퍼바이저 방문은 월 1회~2회로 한다.
- ④ 정기 슈퍼바이징 외 별도로 슈퍼바이징을 요청할 경우 "乙"은 가맹점 방문 1회당 금 오만오천 원(₩55,000/부가세포함)을 부담하여야 하며, 방문시 반나절 초과 또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추가 경비를 포함하여 최대 금 일십육만오천원(₩165,000/부가세포함)을 부담한다.(제주 및 도서지역 방문 시 교통비 등 실비 추가부담)
- ⑤ 정기 슈퍼바이징 비용은 매월 25일 CMS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제3자 물류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 이상으로 공급하지 않아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매장운영에 대한 민원사항 등 체크	필요시, 요청시	문의: 070-4667-0852
재료관리	본사에서 허락하는 재료외의 재료사용 등을 체크	필요시, 요청시	문의: 070-4667-0852
시설관리	내/외부 시설파손 및 유지보수 체크	필요시, 요청시	문의: 070-4667-0852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더해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디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더해장]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더해장]의 비밀을 누설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하며 점포 운영과정에서 지득한 당상의 영업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더해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가

제3자를 통하여 가맹점에 물류를 공급하나 이를 통하여 물류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없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제공할 수 없음	-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외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 가맹점주 및 제3자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별첨 참3	2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판매 가격은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더해장과 동일한 메뉴를 주품목으로 판매를 하는 업종	더해장, 더진국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 없이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으며, 원칙 적으로 당사의 다른 브랜드인 [더진국]가맹점 영업지역이 아닌 곳을 출점대상지역으로 하므로 영업지 역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1.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 □ 괴키기즈	2. 대단위 상업건물(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복합상가,		
거리기준	종합병원 등과 그로 형성된 100m 내외 주위 상권)		
	3. 온라인(TV 홈쇼핑, 방송 판매, 온라인 판매 등) 및 후원행사는 별도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 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더해장'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더해장]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и
○ [더해장]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и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26조제1항 각호	
1. "을"이 제3조 제1항의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제4조에서 허용한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甲"의	
서면 동의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을"이 제 4 조 6 항의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4. "을"이 제 21조의 감독 및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5. "을"이 제 17조의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6. "을"이 제 22조의 영업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을"이 제 23 조의 물품대금 가맹금,교육비 및 "을" 이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하는 경우	
8. "을"이 제 27 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제33조
9. "을"이 제 29 조, 제 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3포 1항
10. "을"이 제 3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및 판촉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1. "을"이 제 30 조 상의 협의나 시설의 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2. "을"이 제 31 조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을"이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 "을"이 제36조, 제 3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을"이 제31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을"이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을"이 제 22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	제33조 3항
	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	
	한 경우는 제외한다.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	
	기 어려운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1.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0조5항

#### ○ 2.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은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재계약시 갱신조건이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별도의 추가부담금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 운영 기준을 조스하 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개월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rightarrow$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담당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사업 영업 전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에 상속사실 통지	교육수료 및
대리행사	불가	-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귀하가 속한 영업지역과 동일한 시, 군, 구 내에서] [더진국]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더해장과 동일한 메뉴를 주 로 판매를 하는 업종	목으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담당팀 (070-4667-0852)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더해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월20일 이상	<b>문의: 담당팀</b> 070-4667-08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점주포함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담당자 가맹점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 관리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요청시	본사 담당팀	
품질 관리	담당자 고객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요청시	본사 담당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더해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딛	비율	분담 절차	ΗЭ
丁正	97.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는 문급 결사 	비고
광고 전체 행사	고 상품광고, 상품광고+가맹 광고비의 저무진광고 50%		광고비의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비 율에 따라 산정	가맹점주 의견수렴 → 광고기획→ 행사 1개월 전 가맹점주에게 통지→ 광고비 납입(통지수령 후 2주내)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모집광고	100%	-		
개별 행사	 행사 <sup>(</sup>	에 따라 달리	·짐	특별한 절차없이 본사와의 협의로 결정	월별판촉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 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광고.판촉의 내용 및 일시등과 관련하여 본사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 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 액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IV.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1)~4)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참고하시기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바랍니다.
점포실측/설계	- 점주 자율 진행	D-27~25(3일)	(8페이지)
실내외 공사착수	- 점주 자율 진행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매장마다 상이 (오픈 7일전까지 완료)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및 구제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경영지원	가맹점 오픈 시 조기안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오픈 가맹점	오픈 후 1달 내	- 포털 사이트 매장 정보 등록 및 노출 - 블로그 체험단을 통한 바 이럴 마케팅 지원	
매출부진 가맹점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 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월 매출 전 월 대비 20% 이상 감소 시	가맹계약 기간	- 판매촉진을 위한 가맹점 별 홍보물디자인 유상 제 공 - 배달 서비스 등 추가매출 증대방안 컨설팅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더해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본사 소개/ 가맹점 경영	동영상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재교육	본사 판단	동영상 교육	본사 판단하에 결정	본사 판단하에 필요시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등	동영상 교육	본사 판단하에 결정	본사 판단하에 결정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더해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동영상 교육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
재 교육	동영상 교육	없음	본사 판단하에 필요시
보수 교육	보수 교육 동영상 교육 없음		본사 판단하에 필요시
土十 业书	000 ET		(신메뉴개발 등)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또는 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계약 체결 후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4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필요로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전개 후라도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수강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에 따라 14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견번	지역	명칭	소재지	비고
·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끝-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70-4667-085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또는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구입강제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2. 판매 상품 및 판매가격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위반 시 책임	비고
순대해장국	8,000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순대국밥	7,500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얼큰순대국밥	8,000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수육해장국	8,000	시정 요구한 날부터	
고기만국밥	7,500	2개월 후에 계약해지.	2021.12
황태국밥	7,000	단,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기준
곱창국밥	7,500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는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	

# 별첨3.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첨부1.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회	<u> </u> :	)
	상호명(영업표지)		(주)선	넘김과나눔	(F&C Co., Ltd.)(	더ㅎ	배장)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손 석 우		
L I	주소(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비동 520호,521호(상현동, 광교우미뉴브지식산업센터)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선	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b>∴</b> L					
게 지점장		Υſ					

## 첨부2.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증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충분한 설명를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 확인서4: 비밀 유지 확약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영 업 표 지 :	더해장
제 공 일 자 :	
수 령 장 소 :	
수령자 주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주식회사(주)섬김과나눔(F&C Co.,Ltd.) 대표이사 손 석 우 (인)
※ 가맹본부란을 제S	니한 이외의 기재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